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97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3
2. 선원퇴직연금등의 우선변제 등	19
3. 선원퇴직연금사업자	22
4. 선원퇴직연금제도 장려금 등	3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6.

3. 회 부 일 : 2024. 7. 29.

II. 제안이유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물류·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그러나 육상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승선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선원은 고용계약 특성상 단기 계약이 대부분으로 동일 선사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동일 선사 내에서 근무지(선박) 이동 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퇴직금의 적립과 활용이 어려워 노후 생활자금의 부족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선원퇴직연금’ 및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 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나. 선박소유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55조의 6부터 제55조의13까지 신설).

다.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4 신설).

라.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8 신설).

마.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5조의19 및 제55조의20 신설).

IV. 검토의견

1.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원퇴직연금,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0호의2·제10호의3, 제55조의6,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3까지 및 제55조의15부터 제55조의17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선원퇴직연금”이란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선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u>
<u><신설></u>	<u>10의3. “선원퇴직연금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u> <u>가. 선원이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u> <u>나.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선박</u>

11. ~ 23. (생략)

<신설>

<신설>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다. 선원의 선택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선원퇴직연금제도로써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1. ~ 23. (현행과 같음)

제55조의6(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선박소유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선원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선박소유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선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선원퇴직연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의9(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신 설>

제55조의6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선원퇴직연금 가입선원에 관한 사항
 2.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3. 선원퇴직연금 수준에 관한 사항
 4. 선원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5. 선원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급 요건 등에 관한 사항
 6. 선원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7.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8. 가입선원의 퇴직 등 선원퇴직연금 지급사유 발생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9. 선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제3호의 선원퇴직연금 수준은 선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승선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의10(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선원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선원퇴직연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8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은 과거 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선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선원퇴직연금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선원과 가입선원이었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선원퇴직연금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선원에게 서면,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선박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⑤ 선박소유자는 가입선원의 퇴직 등 선원퇴직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 설>

선원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선원퇴직연금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가입선원 및 선원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선박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선원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선원퇴직연금 수준이 제55조의9제2항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선원퇴직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선원퇴직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의16(선원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제55조의9제1항제5호 및 제55조의11제1항제6호에 따른 선원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퇴직연금급여: 10년 이상 부담금을 납입한 60세 이상의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퇴직일시금: 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선원퇴직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퇴직 연금제도 도입 1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 5년 이상 부담금을 납입한 선원도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원퇴직연금 급여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선원퇴직연금의 지급은 수급요건을 갖춘 해당 선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선원이 60세 이후에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제55조의6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급요건을 갖춘 선원이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원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해당 선원이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 ☐ 선원은 육상근로자와 달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 「선원법」 제55조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선원퇴직금제도 개요²⁾]

구분	주요내용
지급대상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선원
지급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 30일분 이상
중간정산	선원 요구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특례조항	계속근로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선원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선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 지급

그런데 선원은 고용계약 특성상 단기 계약이 대부분으로 동일 선사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동일 선사 내에서 근무지(선박) 이동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의 적립과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1) 「선원법」

제55조(퇴직금제도) ①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선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후 생활 안정대책 마련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 p.4
-일시: 2016년 8월 9일(화), 주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이완영의원
-주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또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의 경우 사내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지급권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선원도 육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가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 및 선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퇴직금제도만으로는 선원의 노후 대비책이 미흡하므로 기업 도산 시에도 선원의 퇴직수급권이 보호되고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선원의 연령별 현황]

(2023. 12. 31. 기준)

구 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선원	30,587명 (100%)	3,532명 (11.5%)	3,243명 (10.6%)	3,302명 (10.8%)	7,228명 (23.6%)	13,282명 (43.4%)

※ 해양수산부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현재도 퇴직금제도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선사의 경우에는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개정안에서도 선박소유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의무가 아닌 임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선박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선사 퇴직연금제도 가입 현황]

□ 총 선사 수 대비 퇴직연금제도 가입 선사 수

업종 ³⁾	총 업체수 (미응답 업체 포함)	퇴직연금 가입 선사수(응답선사기준)				미가입 선사수 (응답선사기준)
		계	DB	DC	IRP	
외항상선	174개(일부응답)	14개	14개	-	-	14개
내항상선	821개(전체응답)	102개	61개	41개	-	719개
원양어선	35개(전체응답)	-	-	-	-	35개
연근해어선	2,143개(미응답)	-	-	-	-	-
총계	3,173개	116개	75개	41개	-	768개

※ 해양수산부

□ 총 선원 수 대비 퇴직연금제도 가입 선원 수

업종	총 선원수 (미응답 업체 포함)	퇴직연금 가입 선원수(응답선사 기준)				미가입 선원수 (응답선사기준)
		계	DB	DC	IRP	
외항상선	8,634명 ⁴⁾ (일부응답)	2,754명	2,754명	-	-	1,876명
내항상선	7,518명(전체응답)	2,274명	1,771명	503명	-	4,940명
원양어선	1,104명(전체응답)	-	-	-	-	1,104명
연근해어선	11,608명(미응답)	-	-	-	-	-
총계	30,587명	5,028명	2,754명	503명	-	7,920명

※ 해양수산부

3) (외항상선) 174개 회원사 중 28개 선사 응답

(연근해어선) 전체 선사 무응답, 수협은 미응답한 2,143개소 모두 미가입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임

4) (외항상선) 응답한 28개 선사 소속 선원 수는 4,630명

- 둘째, 선종별 선박소유자의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임⁵⁾

□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 및 선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퇴직연금제도 도입 선사 수, 업종별 참여의사, 퇴직연금 사업자(해운조합) 등 現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⁶⁾

- 참고로, 현행법 체계하에서 제한적인 퇴직연금설정이 가능하며 이미 일부에서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상황으로 임의사항인 법 개정을 계기로 반대 또는 소극적인 업체의 추가가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임.

5)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2016년) p.13, <토론회 당시 업계 의견>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외항상선을 제외한 내항상선,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등 대부분 업종은 선사의 적립금 납부 부담으로 퇴직연금 제도 설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음.

구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
연근해 어선	- 조업기간 중에 받은 임금(퇴직금 포함)을 휴어기 동안 사용하고 있어 퇴직금 적립시 부족한 생활비 지원 요청
해외 취업상선	- 연금 수령보다는 하선 후 퇴직금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적립된 퇴직금의 수시 인출 허용 요청
기타	- 외항상선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적극적이거나, 내항상선·원양어선은 선주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소극적임

※ 2023년 기준 전체 30,587명의 선원 중 외항상선 선원은 8,634명임(28.2%)

- 6) 2013년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연구용역 이후 후속연구 미실시
- 퇴직급여 감소 예상 시 사전 고지 의무,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등 11년 전 전문가 연구·검토 이후 3차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사항의 반영 여부 등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11년 전 전문가 연구결과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이 지금의 정책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또는 원적에서 재검토 필요하다는 설명임.

<업계 의견>

- 한국해운조합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공제회 운영 등 퇴직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된 바 없다는 설명임.
- (그 외 업계)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협회(외항상선), 수협중앙회(연근해어선) 등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임의사항이기에 별다른 의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회원선사, 조합회원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견 수렴 이후에 공식적인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임.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의 비교

□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참고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내용의 경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정의	선원이 받을 퇴직급여수준 사전 결정	선박소유자의 부담금수준 사전 결정	급여·부담금 수준 미확정
급여수준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부담금 납입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선원
적립운용주체 (투자리스크부담)	선박소유자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부담)	선원(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선호계층(예상)	장기근속자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
주요대상(예상)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연봉제, 중소기업	-

- 개정안에 따르면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선원이 퇴직 후에 받을 급여의 수준을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 합의를 통해 미리 설정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을 미리 설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선원의’ 선택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

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선원퇴직연금제도로써 급여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말함.⁷⁾

□ 최소적립금의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기준책임준비금⁸⁾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함)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달리 안 제55조의10은 최소적립금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전부개정(2011.7.25.)하면서 같은법 시행령(전부개정, 2012.7.24.)에서는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의 6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면서, 퇴직급여 지급에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향후 근로자 퇴직연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적립금 비율을 연차별로 인상하였음.

7)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함.

8)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지칭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이후 2022년 4월 13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최소적립금을 80% 이상으로, 같은법 시행규칙에서는 100%로 규정하고 있음.⁹⁾

□ 아울러, 퇴직연금 수령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안 제55조의16는 선원퇴직연금의 수급요건으로 10년 이상 부담금을 납입한 ‘60세 이상’의 선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선원은 육상근로자 대비 고령화 비율 및 퇴직 연령이 높아 60세 이상으로 연금수급요건을 설정하여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2.4.13.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2022. 5. 18. 일부개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삭제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근로자 및 선원의 연령별 구성인원 비교]

(2023. 12. 31. 기준)

구 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근로자	1,186만명 (100%)	186만명 (15.7%)	290만명 (24.4%)	299만명 (25.2%)	265만명 (22.3%)	147만명 (12.4%)
선원	30,587명 (100%)	3,532명 (11.5%)	3,243명 (10.6%)	3,302명 (10.8%)	7,228명 (23.6%)	13,282명 (43.4%)

※ 해양수산부

2. 선원퇴직연금등의 우선변제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박소유자가 선원퇴직연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하고 선원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7 및 제152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55조의7(선원퇴직연금등의 우선 변제) ① 선박소유자에게 지급의 무가 있는 퇴직금, 제55조의9제2항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 제55조의11제5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선원퇴직연금등”이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4년간의 선원퇴직연금등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 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 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 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 할 수 없다.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 -----퇴직금, 선원퇴직연금----- ----- ----- -----.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선원퇴직연금등¹⁰⁾의 우선변제와 양도·압류 금지 조항을 마련하여 선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됨.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의 최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달리 개정안은 최종 4년간의 선원퇴직연금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퇴직금에 대해서 최종 4년분에 대한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규정¹¹⁾하고

10)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11) 「선원법」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MLC(국제해사노동협약, ILO, '15년 기준) 개정¹²⁾('14년 개정, '17년 발효)에 따라 현행 「선원법」에서 퇴직금의 4년분을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12) ※ 해양수산부: 임금·퇴직금 보장 범위 강화(3개월·3년 → 4개월·4년)

3. 선원퇴직연금사업자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한국해운조합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5조의8),

선박소유자·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규정 등을 신설하되(안 제55조의19부터 제55조의23까지), 선원퇴직연금 수령, 부담금 반환,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선원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며(안 제55조의24), 기타 별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55조의8(선원퇴직연금사업자) ① <u>제55조의6의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이하 “선원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선원퇴직연금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2.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55조의19(선박소유자의 책무) ① 선박소유자는 법령 및 선원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선원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선원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선원에게 해당 사업의 선원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5조의20(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선원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제55조의 17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5조의17에 따른 선원퇴직연금 제도 설정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그 밖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선원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선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5조의21(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

<신 설>

<신 설>

대한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선원퇴직연금운영을 위한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내부규정, 지침 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의2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선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선원(선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원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55조의2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가능한 금융거래정보 및 요청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7조(벌칙) (생략) <u><신설></u>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u>아니하였을 때</u> <u><신설></u> 3의2. (생략) 4. ~ 17. (생략) <u><신설></u> 제1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u>제37조를 준용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67조(벌칙) ① (현행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음) <u>②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70조(벌칙)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아니</u> <u>하였거나, 제55조의2제2항의 선원퇴직연금 수준 및 제55조의2제2항의 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퇴직 시 정당한 선원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u> <u>3의2. 제55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u> <u>3의3. (현행 제3호의2와 같음)</u> 4. ~ 17. (현행과 같음) <u>제170조의2(벌칙)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74조(벌칙) -----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4의2. · 4의3. (생략)

5. (생략)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제1호 · 제2호, 제175조 또는 제17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55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퇴직연금사업자

4의3. 제55조의21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 ·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퇴직연금사업자

4의4. · 4의5. (현행 제4호의2 및 제4호의3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178조(양벌규정) -----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0조의2·
-----제174조제1호 · 제2호 · 제4호의2 · 제4호의3---

-----.

제1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설>	3의3. 제55조의19제2항을 위반하 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외에도 한국해운조합에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해운조합이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선원공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선원의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임.
- ☐ 개정안은 선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선원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에게도 선원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되,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정부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신설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정성과 안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한국해운조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보험회사나 은행 등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비교할 때 자금 운용 능력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므로 자금운용 관련 전문 인력 확충과 업무확대에 따른 운용 재원의 구체적 확보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또한,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이 선박소유자·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법」과 개정안 비교]

구 분		「근퇴법」	개 정 안
선원퇴직연금사업자		「근퇴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 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공단, 대령으로 정하는 자	「근퇴법」 선원퇴직연금사업자 + ○ 한국해운조합
선박소유자(사용자)의 책무		○	○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
사용자에 대한 감독		○	X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	정부	○	○
	금융위원회	○	X
	금융감독원	○	X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회사, 은행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선원퇴직연금사업 운영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¹³⁾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감독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총괄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기관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감독대상 및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용자	*감독(근퇴법 제35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퇴직연금제도 운영중단 *행정조사(근퇴법 제40조) *수사권(근퇴법 제45조)		
퇴직연금 사업자	*행정조사(근퇴법 제40조) *수사권(근퇴법 제44조·제45조)	*감독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영업의 일부정지 등(근퇴법 제36조제3항) *등록, 등록취소, 업무이전 명령(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등의 변경·보완 명령 (근퇴법 제36조제4항) *표준형DC제도의 표준 계약서 승인(동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및 그 직원에 대한 주의·감봉·정직 요구(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의 위반여부 확인 (금융감독원) 요구(동법 시행령 제41조제6항) *수사(근퇴법 제45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준수사항 위반 확인 (동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관련기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근퇴법 제40조)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9.20.), 고용노동부

- 이처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장기적으로 적정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보험업 등에 관한 감독을 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서 선원퇴직연금사업자로 한국해운조합 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다수의 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 없이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해양수산부가 전적으로 선원퇴직연금을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우려가 되며, 선원퇴직연금사업자 감독의 문제는 기존 퇴직연금을 감독 중인 금융위·금감원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4. 선원퇴직연금 장려금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5조의14),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18).

현행	개정안
<신설>	제55조의14(선원퇴직연금 장려금) ①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려금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선원퇴직연금 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은 제55조의6에 따른 선원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선원 중 제55조의16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15 제2항의 해당 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신 설>	근로기간은 장려금 지급 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연간 출연금의 운영수익 총액이 제2항에 따른 선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장려금의 적립기준, 선원별 적립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18(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2. 선원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노사단체 및 선원퇴직연금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3. 그 밖에 선원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선원퇴직연금사업자가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가입 선원에게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과학기술인의 직업안정성, 사회적 인식 및 경제적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¹⁴⁾ 대학 등 교육기관에 비하여 노후보장제도가 미흡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등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2003년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였음.
- 그러나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초기 가입대상 기관 및 회원가입률이 낮아 과학기술인의 부담금 대비 연금수혜율이 대학교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는데,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함) 제도 도입(「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2009.1.7.)을 통해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에게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처럼 장려금은 일정기간 동안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이며, 정부출연금의 운영수익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급대상을 일반회원 중 일부로 제한하고 있음.
 - 즉, 정부출연 장려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지급¹⁵⁾하고, 민간연구기관 등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참여하되, 그 재원의 운영수익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은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14) 97년 외환위기에 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감축, 정년단축(65세→61세), 퇴직금누진제폐지 등 <당시 과학기술인 노후보장제도>

퇴직연금(공제회 관리)	기관 법정부담금 8.3%	➔	확정기여금 17.3%
국민연금(연금관리공단 관리)	정부 4.5% 개인 4.5%		

15) 장려금 도입 초기 당시 정부는 총 2,000억원의 재원을 공제회에 출연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음.

[선원퇴직연금 장려금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비교]

구 분	선원퇴직연금 장려금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정의	선원이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	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
재원	정부 등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	
퇴직연금사업자	한국해운조합 「근로법」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선원퇴직연금사업자 (투자매입자 보험회사 은행 협동조합중앙회 등)	과학기술인공제회
지급대상	선원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선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비영리법인, 특정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적립액 상한	대통령령에 위임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

□ 개정안은 과학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같이 선원퇴직연금 사업자가 정부나 그 밖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을 운영한 수익으로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게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정부는 해당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선원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그 입법 취지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퇴직연금사업을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경우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 확립을 위해 설립된 하나의 사단법인인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¹⁶⁾하고 있는데 반해,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수의 투자매매업자,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다수의 연금사업자가 장려금의 재원 조달방법, 재원운영, 지급 방식 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2013년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당 선원퇴직연금 장려금 제도는 선원공제회를 설립한 후 해당 공제회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였음.

- 둘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고 있는 육상근로자와는 다르게 선원퇴직연금가입자에게는 정부 등이 출연한 재원으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의 경우 2013년 연구용역에 따르면 선원공제회가 장

16)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정부출연금과 기술료로 조성된 재원(3010억원)을 공제회가 운용하여 그 수익금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퇴직연금에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23년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149억원 적립함. (헤럴드경제, 2024.3.26.)

- 2023년 한해 동안 퇴직으로 적립된 발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정부출연연 퇴직자는 489명은 1인 평균 1355만원을 퇴직연금과 함께 수령
- 공제회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임금총액의 1.0% 내외로 발전장려금을 개인별로 적립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발전장려금은 약 1500억원에 달함.
- 발전장려금의 적립 기준은 재원의 운용수익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매년 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연금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가입자 대표, 사용자 대표, 연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정위원회로서 발전장려금 등 과학기술인연금의 주요사항을 심의함.

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었으므로, 금융기관 등의 연금사업자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재직 중에도 국고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비영리법인, 특정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등으로, 선원-선사 등 사인 간의 근로관계에 대한 국고출연은 곤란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9